

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
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
일부개정조례안
(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30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5. 31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5. 31.

2. 제안이유

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「민법」(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 공포, 2023. 6. 28. 시행)과 「행정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19148호, 2022. 12. 27. 공포, 2023. 6. 28. 시행)됨에 따른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중 나이 규정에서 “만” 표시 삭제(안 제1조부터 제13조)

4. 관계법령

- 「민법」 제158조 및 「행정기본법」 제7조의2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「민법」 및 「행정기본법」의 개정에 따라, 만 나이 정착을 위해 금천구 자치법규 중 나이와 관련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- 정비대상 : 조례 13개

| 연번 | 관리부서명 | 조례명 | 정비내용 |
|----|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교육지원과 |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(제2조제1호) | 만6세~12세 → 6세~12세 |
| 2 | 일자리청년과 |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(제2조제2호, 제5조제2호) | 만 36세 → 36세 |
| 3 | 일자리청년과 |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(제18조제6항제1호) |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→ 19세 이상 39세 이하 |
| 4 | 일자리청년과 |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(제2조제3호) | 만 39세 → 39세 |
| 5 | 복지정책과 |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(제4조제1호) | 만 65세 → 65세 |
| 6 | 어르신장애인과 |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(제2조제1호, 제5조, 제6조제1항) | 만 100세 → 100세 |
| 7 | 어르신장애인과 |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(제2조제1호) | 만 65세 → 65세 |
| 8 | 가족정책과 |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(제22조의3제2항) | 만6세 → 6세 |
| 9 | 아동청소년과 |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(제2조제1호 및 제4호, 제4조) | 만 18세 → 18세 |
| 10 | 주차관리과 |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(제2조의2제1항제11호) | 만13세 → 13세 |
| 11 | 보건정책과 |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(제3조제2항제6호의2) | 만65세 → 65세 |
| 12 | 건강증진과 |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(제2조제1항) | 만 65세 → 65세 |
| 13 | 건강증진과 |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제5조) | 만 65세 → 65세 |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민법

[시행 2022. 12. 13.] [법률 제19069호, 2022. 12. 13., 일부개정]

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2. 12. 27.]

[시행일: 2023. 6. 28.] 제158조

행정기본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14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 12. 27.]

[시행일: 2023. 6. 28.]